

2024년 4월 21일 특강 2024 절대사로 축약판

70만명의 선택,
검증된 역사 전문가!
고종훈

1. 총주(중원) 고구려비

5월에 고구려 대왕의 상왕공과 신라 매금은 영원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여 서로 하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동으로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중략) 신라 매금이 신하와 함께 고구려의 대사자 다우환노를 만나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당주인 발위사자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의 중인(衆人)을 내지로 옮기게 하였다.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 이 일대를 정복하고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대왕', 신라를 '동이', 신라왕을 '매금'이라 칭하는 것을 통해 당시 고구려 국력의 강대함과 독자적 천하관을 보여준다.

2. 가야의 건국 설화

- 이 나라에는 왕이 없어서 아홉 명의 족장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구지봉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① 족장들은 백성들을 구지봉에 모아 놓고 신이 하라는 대로 흠을 파헤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위 먹으리.”
- ② 시조는 이진아시왕이고,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① 구지봉 설화는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의 탄생 설화이다.

② 이진아시왕은 대가야의 건국 시조이다.

3. 발해의 발전

- 국서에서 말하기를, “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고 하였다.
- 지금 보내온 국서를 살펴보니 부왕(父王)의 도를 갑자기 바꾸어 날짜 아래에 관품을 쓰지 않았고, ② 글 끝에 천손(天孫)이라는 참람된 칭호를 쓰니 법도에 어긋납니다. (중략) 지금 대씨와 일없이 고의로 망령되어 사위와 장인을 칭하였으니 법례를 잃은 것입니다.
- ③ 왕자 대봉예가 당 조정에 문서를 올려, 신라보다 윗자리에 자리 잡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국명의 선후는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닌데, 조정 제도의 등급과 위엄을 지금 어찌 나라의 성하고 쇠한 것으로 인해 바꿀 수 있겠는가?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① 727년 발해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이다. 이 국서에서 발해는 고구려 계승 국가임을 자처하였다.

② 771년 발해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로, 스스로 천손을 칭하였다. 이 일로 일본과 외교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③ 897년 쟁장 사건(외교상 서열을 둘러싼 다툼)에 대한 사료이다. 발해와 신라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였음을 보여 준다.

4. 발해의 경제와 사회

-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① 솔빈부의 말, 현주의 삼베, 옥주의 풀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가 있고, 과일로는 환도의 오얏과 낙유의 배가 있다.
- 그 넓이가 2천 리이고, 주현의 숙소나 역은 없으나 곳곳에 마을이 있는데, 모두 말갈의 마을이다. ② 그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토인(원주민)이 적다. 모두 토인을 마을의 우두머리로 삼는데, 큰 촌은 도독이라 하고, 다음은 자사라 한다.

- ① 발해의 주요 수출품으로 모피, 인삼, 불상, 자기 등이 있었으며, 이 밖에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여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 ② 토인(원주민)은 옛 고구려인을 가리킨다. 발해는 이원적 사회 구조로 구성되었는데 지배층은 주로 토인, 피지배층은 말갈인이 차지하였다.

5. 사치 금지 교서

왕이 말하기를 “세상의 습속은 점점 각박해지고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오로지 외래품의 진귀한 것만을 숭상하고 토산물의 야비한 것을 싫어한다. (중략) 이에 옛날 법에 따라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그래도 만약 일부러 범하는 자는 진실로 응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834년 흥덕왕이 내린 사치 금지 교서이다.

6. 신라 말의 사회 혼란

- 왕이 사신을 보내 세금을 독촉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별떼같이 일어났다. ①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 당나라 19대 소종 황제가 중흥을 이룰 때, ② 전쟁과 흉년 두 가지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어 동쪽으로 왔다.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즐비하였다.

- ① 진성여왕 때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등이 대표적이다.
- ② 최치원이 지은 해인사 ‘묘갈상탑기’에는 진성여왕 때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묘사되어 있다.

7. 임신서기석

①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하늘에 맹세하고 기록하니,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성의 길을 견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편안치 않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모름지기 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 이보다 앞서 신미년 7월 22일 크게 맹세하였다. 즉, ② “서경”·“상서”·“예기”·“춘추전”을 3년 안에 차례로 익힐 것을 맹세한다.

— 임신서기석 —

- ① 임신년에 화랑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서약한 내용을 기록한 비문이다.
- ② 신라의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한 것을 알 수 있다.

70만명의 선택, 검증된 역사 전문개!

8. 난량비서

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풍류(風流)라 하였다. 이 교의 기원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3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민중을 교화하였다. 즉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니 이것은 노나라 사구의 취지이다.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처리하고 말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종지였으며,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것은 축견태자의 교화 그대로이다.

최치원은 ‘난량비서’라는 글에서 화랑도(풍류도)가 유교와 도교, 불교를 모두 포함한 전통사상으로 이해하였다.

9.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영기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중략) 능히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원하노니 우리 대왕의 수명을 산악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게 하소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수리 중에 사리장엄구와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사리봉영기를 통해 사택적덕의 딸인 백제 무왕의 왕후가 미륵사탑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 정효공주 묘지

공주는 대흥 56년 여름 임진일에 궁 밖에서 사망하니 나이는 36세였다. 이해 겨울 기묘일에 염곡의 서쪽 언덕에 매장하였으니, 이것은 예의에 맞는 것이다. 황상(皇上)은 조회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여, 정침에 들어가 자지 않고 음악도 중지시켰다.

‘대흥’은 발해 문왕의 연호이다. 정효공주 묘는 당의 영향과 고구려 영향이 혼합되어 있는 벽돌 무덤으로, 내부에 묘지와 벽화가 있다.

11. 훈요 십조

- 4조 ①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 5조 ② 서경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3달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 6조 ③ 나의 소원은 연등과 팔관회에 있는 바,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 ① 고려 태조는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 ② 태조는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서경을 중시하였다.
- ③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였다.

12. 봉사 십조

그가 글을 올리기를 “**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했습니다. …(중략)… 원컨대 폐하께서는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서 이를 행하여 빛나게 중흥하시어, **②** 이에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뢰입니다.” ……

3. 벼슬아치들의 **③** 토지 검병으로 인한 폐단이 많으므로 토지 대장에 따라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
5. 관리가 공물 진상을 구실로 약탈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 ①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② 최충헌은 사회개혁으로 봉사10조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 ③ 최충헌은 봉사10조에서 권력자들의 토지 점탈을 시정할 것과 공평한 조세 징수를 제시하였다.

13. 세조구제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에 따라 바꿀 필요가 없다.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전에 보낸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한다.
몽골에 지원해 머무른 사람들은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다.

원 세조(쿠빌라이)가 항복 의사를 전한 고려 태자에게 약속한 여섯 가지를 '세조구제'라고 한다. 세조구제의 핵심은 불개토풍(不改土風)으로 사실상 고려의 종묘와 사직, 풍습과 제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14. 충선왕

- **①**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이다. (중략) 이로온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중략) 철원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다 **②** 여러 대의 공신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것이다.

- ① 충선왕은 충렬왕(최초의 부마왕)과 제국대장공주(쿠빌라이 대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 ② 자료는 충선왕의 즉위(복위) 교서이다. 자료에서 재상지종으로 불린 주요 가문은 고려 후기 지배층인 권문세족이다.

15. 토지 제도의 문란

우왕 14년(1388년) 7월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하였다. “근년에 이르러 검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간혹한 무리가 주와 군을 묶고 산천을 경계로 하여 조업전이라 하면서 서로 빼앗습니다. 1묘의 전주(田主)가 5, 6을 넘고 1년에 전조(田租)를 8, 9차레나 거두어 갑니다. 왕실 토지에서 종실, 공

신과 조정의 문무 백관의 토지는 물론 외역전, 진, 역, 원, 관의 토지와 다른 사람이 대대로 심어 놓은 뽕나무와 집까지 모두 빼앗습니다.”
- “고려사” -

권문세족은 권력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토지와 몰락한 농민을 모아 농장을 형성하였다. 이는 혁명파 사대부 세력이 전제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16. 고려의 화폐 정책

내(목종) **①** 선대의 조정에서는 이전의 법도와 양식을 따라 조서를 반포하고 화폐를 주조하니, 수년 만에 돈궤미가 창고에 가득 차서 화폐를 통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선대의 조정을 이어서 전폐(錢幣: 돈)는 사용하고 추포(밭이 굽고 바탕이 거친 베)를 쓰는 것을 금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국가에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한갓 백성들의 원성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다. …… 문득 근본을 힘쓰는 마음을 지니고서 돈을 사용하는 길을 다시 정하니, **②** 차와 술과 음식 등을 파는 점포들에서는 교역에 전과 같이 전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백성이 사사roi 서로 교역하는 데에는 임의로 토산물을 쓰도록 하라.

- ① 성종 때 최초로 철전화폐인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 ② 목종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7.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박유가)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위(品位)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러서는 1처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 라고 하였다. 연등회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저놈의 늙은이이다.” 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당시 재상 중에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 “고려사” -

충렬왕 때 박유는 관리들이 첩을 들고, 첩의 소생도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월등하게 많고, 고려의 처녀들이 공녀(貢女)로서 원나라에 보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18. 성리학의 발전

왕(공민왕)이 명하여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였으며, 경술(經術)이 뛰어난 선비들을 택하여 교관으로 삼았다. 이에 이색은 다시 학칙을 정하여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經)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토론하게 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정주(程朱)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 “고려사” -

공민왕은 성균관을 경학 중심의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신진 사대부를 양성하였다.

19. 역사서 서문

○ 삼국사기

군후(君侯)의 선악, 신하된 자의 충(忠)과 사(邪), 국가의 안위, 백성의 이난(理亂) 등을 잘 드러내어 뒷사람들에게 경계를 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마땅히 삼장(三長)의 인재를 얻어 한 나라의 역사를 만세에 남겨 주는 교훈으로 하여 밝은 별과 같이 밝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 등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로 기전체 방식을 도입하여 본기·연표·지·열전으로 구성되었다.

○ 동명왕편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것보다 더 자세하였다.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하였다. 여러 번 탐미(耽味)하여 점차 그 근원을 찾아가니 이는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중략)… 동명왕의 일은 변화, 신이로써 중생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라를 건국한 신이한 사실적 이야기이며, 이를 서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무릇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도(都)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려있는 ‘동명왕편’은 “삼국사기”의 신라 계승 의식을 비판하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였다.

○ 삼국유사

옛 성인들은 예(禮)·악(樂)으로 나라를 흥하며 번성하게 하고 인의로 가르쳤으며, 괴상한 힘이나 난잡한 귀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 뒤에 기회를 타서 대업을 이루는 것이다. …(중략)… 그러니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태어났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신이(神異)로써 다른 편보다 먼저 놓는 까닭이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기사본말체로 서술하였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 역사의 출발점을 고조선으로 설정하였다.

○ 제왕운기

신(臣)이 이 책을 편수하여 두 권으로 나누어 바치는 것은 …(중략)… 중국은 반고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책에서 다 찾아보아 같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요점을 취하고 율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

요동에 또 하나의 천하가 있으니, 중국의 왕조와 뚜렷이 구분된다.

큰 파도가 출렁이며 3면을 둘러쌌고, 북으로는 대륙으로 면면히 이어졌다. …(중략)… 밭 갈고 우물 파며 평화로이 사는 예의의 집, 중국인들은 우리더러 소중화라 하네.

“제왕운기”는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칠언시와 오언시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20. 팔만대장경

심하다. 몽골이 환란을 일으키는 일이어!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고,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것이 또한 금수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 불법이란 것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①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경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 가지이고 판각한 것도 한 가지이며 군신이 함께 서원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인데, 어찌 유독 ② 그때에만 거란병이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몽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동국이상국집”, ‘대장각판군신기고문’ —

① 현종 때 판각한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2차 침입(1232) 때 소실되었다.

②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팔만대장경 판각을 시작하였다.

21. 수령칠사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七事)라는 것은 무엇인가?”하니, 변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하는 일,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간활(간사하고 교활함)을 없애는 일, 군정(軍政)을 닦는 일, 호구를 늘리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이 바로 칠사입니다.”라고 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군수, 현감 등을 말한다. 조선의 수령은 행정 및 조세 징수 업무 이외에도 관할 지역의 군사, 교육,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2. 진관체제, 제승방략체제

- ① 국가에서는 처음에 각 도 군사들을 모두 진관에 분속시켰다. 이에 변란이 있으면 각 진관이 소속 군사들을 거느리고 정돈하여 주장(병사, 수사)의 호령을 기다렸다. (중략) 만약 적의 침략으로 하나의 진관이 무너지더라도 다음 진관이 군사를 정돈하여 굳게 지킴으로써 도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 ② 을묘왜변 이후 김수문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도내의 여러 읍을 순변사, 방어사, 도원수에 게 소속시키니 여러 도에서 본받았다. (중략) 위급한 일이 있으면 멀고 가까운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빈 들판에 모아놓고 천리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하였다.

① 세조 때 진관 체제를 실시하였다.

② 명종 때 을묘왜변 이후 진관 체제를 제승방략 체제로 바꾸었다.

23. 일본과의 관계

- 대마도주에게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하여 2백 섬을 주기로 하였다. ① 세견선은 50척으로 하고 만일 부득이하면 특송선을 보내기로 하였다.
- 대마도주에게 내려준 세사미두 2백 섬 중에 1백 섬을 감하였다. ② 도주의 세견선을 감하여 25척으로 한다.
- 대마도주의 세사미두는 100석으로 하고, ③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 ① 세종 때 대마도주와 계약약조를 맺고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으로 제한하였다.
- ② 중종 때 삼포왜란 직후 임신약조를 맺고 세견선 25척, 세사미두 100석으로 줄였다.
- ③ 임진왜란 이후 기유약조를 맺고 세견선 20척, 세사미두 100석으로 제한하였다.

24. 주화론과 주전론

- ① 주화(主和)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에 허물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신은 아직도 오늘날 화친하려는 일이 그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고, 끝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며,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 최명길, “지천집” -
- 화의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② 명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나라입니다. (신화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

- ① 최명길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므로 외교적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장하였다.
- ② 척화주전론은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 과전법의 실시

공양왕 3년 5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전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 ① 경기는 사망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는 자는 시산(時散)을 막론하고 과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 무릇 수전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 모두를 전수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감하여 전해 받으며, …… ②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마땅히 홀양하여야 하니 그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를 전해 받고, 20세가 되는 해에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 “고려사”, “식화지” -

- ① 과전법은 경기 지방의 토지를 전현직 관료들에게 분급하여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 ② 관리의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홀양전을 지급하였다.

26. 양반의 개념 변화

성종 13년 4월 대사헌 채수가 아뢰었다. “어제 전지를 보니 통역관,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니 듣고 놀랐습니다.

70만명의 선택, 검증된 역사 전문가!

무릇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당, 의관, 약사, 통역관은 사대부의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 의관, 역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서 사족이 아닙니다.” - “성종실록” -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역관이나 의관과 같은 중인층의 승진을 제한하여 이들이 양반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27. 고려사 서문

대개 지난 시기 흥망이 앞날의 교훈이 되기에 이 역사책을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 이 책을 편찬하면서 ①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에 따랐고, 기본 방향은 직접 왕에게 물어서 결정했습니다. ‘본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대의명분의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② 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충신과 간신, 부정한 자와 공정한 자를 다 ‘열전’을 달리해 서술했습니다. 제도 문물은 종류에 따라 나눠 놓았습니다. - “고려사” -

- ① “고려사”는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 ② 신우와 신창은 우왕과 창왕을 의미하며, 신돈의 자식으로 폄하하고 있다.

28. 동국통감 서문

일찍이 세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방은 비록 역사책이 있으나 “자치통감”처럼 장편으로 된 통감이 없다”. ① 잘하는 관리들에게 편찬을 명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② 범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따랐습니다. 강목에서 가려 뽑은 뜻을 따라 번잡한 것을 없애고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삼국이 병립하였을 때는 삼국기라 하고, ③ 신라가 통일한 뒤에는 신라기라 하였습니다. 고려 때는 고려기라 하였고 삼한 이전 시대는 외기라 하였습니다. - “동국통감” -

- ① “동국통감”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1485년(성종 16)에 완성하여 간행하였다.
- ②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이다.
- ③ 신라 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신라기를 독립시키고, 자료가 부족해 체계적인 서술이 불가능한 삼국 이전은 외기로 처리하였다.

29. 성학십도와 성학집요

-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바꾸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황은 군주 스스로가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이이는 현명한 신하가 왕의 수양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였다.

30. 이익의 봉당론

봉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봉당이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오래될수록 봉당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열 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 조정의 봉당도 이와 다르지 않다. …… 과거를 자주 보아 인재를 너무 많이 뽑았고, …… 이 밖에도 벼슬에 드는 길이 어지럽게 많으니, 이것이 이른바 관직은 적은데 써야 할 사람은 많아서 모두 조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익, “곽우록” –

이익은 봉당이 양반들의 이권 다름으로 생겼다고 보고, 극복 방안으로 과거 시험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합격자를 줄 일 것, 천거 제도 병행으로 재야 인사를 등용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31. 봉당 정치의 폐해

① 신축·임인년(1721, 1722)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삼색(三色)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년을 내려오면서 마침내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 ② 근래에 와서는 사색(四色)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 뿐, 예부터 저마다 지켜 온 의리는 쓸모 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사문(斯文 : 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역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 버리니 …… – “택리지” –

- ① 봉당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정국이 혼란해졌다.
- ② 영조의 즉위 이후 탕평책(완론 탕평)이 실시되면서 외형상 여러 당파가 조정에 진출했지만 유학을 위한 시비를 따지지 않고 벼슬만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32. 영조의 탕평교서

근래에 와서 인재의 임용이 당목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 ……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 ① 조신들이 서로 공격하니 공론이 막히고 역당으로 지목하게 되니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다. …… 유배된 사람들은 금오(金吾 : 의금부)로 하여금 그 경중을 헤아려 대신과 함께 등대(登對 : 임금을 직접 대함) 소석(疏釋 : 죄인을 관대히 처결하여 석방함)하도록 하고, ② 전조(銓曹 : 이조)는 탕평의 정신으로 수용토록 하라. …… 너희 여러 신하들은 성인께서 잘못된 자를 바로잡는 뜻을 따라 당수를 버리고 공평하기에 힘쓰라. – “영조실록” –

- ① 숙종 이후 봉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상대당을 역적(역당)으로 공격하고 권력을 특정 봉당이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② 영조는 탕평 정책에 동의하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정국을 운영하였다.

33.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은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

70만명의 선택, 검증된 역사 전문가!

치이다. 중인, 서얼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 백년이 되었다. ① 서얼은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② 우리 중인은 홀로 이 은혜를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의논을 모아 글을 써서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먼저 통문을 띄운다. – “상원과방” –

- ① 철종 때 신해허통(1851)으로 서얼은 청요직 진출이 가능해졌다.
- ②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청요직이라 불리는 승문원·홍문관 등에는 한양 양반(경화사족)이 임용되었고, 서북 사람은 그보다 못한 성균관, 중인은 승진이 어려운 교서관에 임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34. 향촌 질서의 변화

- 영덕의 구향(舊鄕)은 사족이며, 소위 신향(新鄕)은 모두 향리와 서리의 자식이다. ① 근래 신향들이 향교를 주관하면서 구향들과 서로 마찰을 빚고 있다. –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
- 요사이 수령들은 한 고을을 제멋대로 다스려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② 수령이 옳다고 하면 좌수 이하 모두 그렇다고 합니다. – “비변사등록”, 영조 36년 –

- ① 기존 향촌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부유한 상민, 서얼, 중인층이 포함된 새로운 세력인 신향은 기존의 재지사족인 구향과 향촌의 운영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 ② 향회는 지방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자치 기구에서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35. 천주교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받아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입에 공급하는 것이요, 도리와 덕행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위와 가식의 예로써 이미 돌아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 정하상, “상재상서” –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였으므로, 정조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였다.

36. 흥경래의 격문

평서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父老)와 자제와 공·사친민들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옛 티요 단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 의관(衣冠 : 유교 문화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뚜렷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곳이다. ……그러나 ①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糞土)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놈’이라고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 지금, 임금이 나이가 여러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② 김조순·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가지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 – “패림” –

- ① 평안도민의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흥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② 세도 정치 시기에는 김조순, 박종경 등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37. 정약용

- 백성을 위해서 목(牧 : 지방관)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牧)을 위해 태어났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을 섬기고, 백성들은 수레와 말을 내어 추종하면서 목을 보내고 맞이하며, 백성들은 고혈(膏血)과 진수(津髓)를 모두 짜내어 목을 살찌게 하니, ① 백성들이 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아니다.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옛적에는 백성만이 있었을 뿐이니 어찌 목이 존재하였을 것인가. - '월목' -
- 대저 천자란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늘에서 비 내리듯 내려와서 천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땅속에서 샘 솟듯 솟아나서 천자가 되었는가? …(중략)… 여러 현장의 공동 추대를 받은 사람이 제후(諸侯)가 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곧 천자이다. 그러므로 ② 천자는 군중의 추대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 '탕론' -

- ① 백성이 국가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통치자의 이상적인 상을 제시하였다.
- ② 백성들이 수령·제후·천자를 추대하였으며, 이들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38. 박지원의 한전론

한전법을 만들어 모년 모일 이후 이 법보다 많은 자는 더 이상 사들이지 못하게 하고 법령 공포 이전에 사들인 것은 비록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넓어도 불문에 붙입니다. 그들의 자손이 있으면 분배해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중에 혹은 숨기고 실제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법령 공포 후에 법의 제한을 넘어서 땅을 더 점유하는 자는 백성들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에서 적발하면 몰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십 년이 못되어 나라의 토지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 '한민명전' -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수십년 후 매매와 상속을 통해 토지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39. 안정복의 동사강목

- 정통(正統)은 단군·기자·마한·신라 문무왕(9년 이후)·고려 태조(19년 이후)를 말한다. 무통(無統)은 삼국이 병립한 때를 말한다.
-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文籍)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중략)…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안정복은 단군조선을 우리나라 정통 왕조의 시작으로 설정하여 국사의 상한을 중국과 대등하게 끌어올렸으며,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철저히 고증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주자학적 대의명분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여 전통적인 역사 인식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40. 정약용의 기예론

하늘이 날짐승과 길짐승에게 발톱을 주고, 뿔을 주고 단단한 발굽과 예리한 이빨을 주고, 여러 가지 독도 주어서 각각 저 하고 싶은 것을 얻게 하고, 사람으로 인해 염려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게 하였다. 사람에게는 별거승이로 유약하게 제 생명도 구하지 못할 듯이 하였다. 어찌하여 하늘은 천한 금수한테는 후하게 하고, 귀하게 해야 할 인간에게는 아박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인간에게는 지혜로운 생각과 교묘한 궁리가 있으므로 기예를 익혀서 제 힘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 "기예론" -

정약용은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기술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기술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발달되고,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확신하였다.

41.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 ①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들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살 수 있다. ②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①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②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일본 선박에 대해 항세를 받지 않고, 일본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42. 영남만인소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만에 하나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겨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중략)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싫어하거나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략)… “① 러시아·미국·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이만소 -

- ① 1881년 이만소 등 영남 지방의 유생들은 서양 열강과의 수교를 반대하고 “조선책략”을 도입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43.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 제1조 청의 상무 위원을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 대관을 톈진에 파견한다. 청의 북양대신(이홍장)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 제2조 조선에서 청의 상무 위원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다.
- 제4조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객잔(외래 상인이 상품을 보관, 유숙하는 곳) 무역을 허락되 양국 상민의 내지 판매를 금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은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은 물론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과 연안 어업권 등의 특권을 보장하여 조선의 자주권이 크게 침해되었다.

44. 한성조약

제4조 일본 공사관을 신축해야 하므로 조선국은 땅과 건물을 내주어 공사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을 수축이나 증축할 경우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게 한다.

45. 텐진조약

- ① 청은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한다.
3.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있어 ② 청·일본의 두 나라 또는 한 나라가 파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 문서를 보내 알게 할 것이요,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 ① 청과 일본은 조선에 주둔했던 군대를 철수시켰다.
- ② 일본은 청과 동등한 파병권을 가지게 되었다.

46. 농민군 4대 강령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2.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라.
3.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4.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애라.

- 정교, "대한계년사" -

전봉준은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계급 타파 등의 내용을 담은 농민군 4대 강령을 내세워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끌었다.

47. 전봉준 공초

문 : 작년 3월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다고 하니 무슨 사연으로 그리하였는가?

공 : ① 고부 군수가 정액 외에 가렴(加餼)이 수만 냥인 고로 민심이 억울하고 원통하여 이 의거가 있었다. ... (중략) ...

문 : 다시 난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공 : 일본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민간에게 일언반구의 말도 공포함이 없이 ②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하기로, 초야의 사민(士民)들이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인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1차 문고자 함이었다.

- '규장각 문서' -

- ① 고부 민란과 제1차 농민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이었다.
- ②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북공을 침입하고 곧이어 청일 전쟁을 일으키자, 농민군은 이를 응징하기 위해 1894년 9월 삼례에서 다시 2차 봉기하였다.

48. 독립서고문

우리 황조가 우리 왕조를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짐의 대에 와서 시운이 크게 변하고 문화가 개화되었으며 우방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직 자주 독립을 해야 우리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짐은 이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고하면서 조종이 남긴 업적을 우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은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1895년 1월 고종은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와 내무대신 박영효의 권고로 세자, 종친, 신료를 이끌고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과 흥범 14조를 반포하였다.

49. 중추원 신관제

제1조 중추원은 의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사, 의정한다. (1) 법률, 칙령안, (2) 의정부가 결의하여 상주하는 일체 사항, (3) 중추원의 임시 건의 사항, (4) 인민의 건의를 채용하는 사항

제3조 중추원은 다음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의관 50명으로 선임하고, 그 반수는 독립협회의 회원투표로 선거하며, 나머지 반수는 국왕이 임명한다.

독립협회는 박정양 내각과 협의하여 국왕 지문 기구인 중추원을 근대적 상원 형태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중추원 관제 개편은 의회 설립을 통해 근대적인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50. 박성춘의 연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 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친 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 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개막 연설을 한 것은 민중 의식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51. 한청 통상 조약

제1관 앞으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과 인민이 거류하는 경우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제2관 이번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양국은 서로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원을 설립하는 데 모두 편의를 봐줄 수 있다.

대한제국은 1899년 청국 정부와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청 통상 조약은 대한제국과 청국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맺은 근대적 성격의 통상 조약이다.

52. 한일의정서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한·일 정부는 상호의 승인없이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일제는 대한 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1904. 2). 이를 통해 일제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53. 을사늑약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맡고, ①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함.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② 황제 폐하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

① 일본의 승인 없이는 대한제국은 어느 나라와도 교섭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일제는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54. 한일신협약

제1조 한국 정부는 ①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는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부수각서’

제3조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함

1. ②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①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후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여 통감의 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②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를 통해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55. 시일야방성대곡

천만 뜻밖에 5조약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우리 정부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4천 년의 강토와 5백 년의 종묘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명으로 하여금 모두 다른 사람의 노예 노릇을 하

게 하였으니, 아! 원통하고 분하다. 우리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 ‘황성신문’, 1905. 11. 20 —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을사늑약 체결을 비판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항일 논설을 발표하였다.

56. 민영환의 유서

슬프다! 국치와 민욕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 영환은 다만 한번 죽음으로써 우리러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 일심협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몸도 저승에서 기뻐 웃으리라. 슬프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황실 시중 무관이었던 민영환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7. 대한사민논설

5. 방곡을 실시하여 구민법을 채용할 것
6.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시킬 것
18. 금광의 채굴을 엄금할 것
10. 곡가를 낮추어 안정시킬 것
13.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것

을미의병 해산 이후 일부 농민, 행상 유민, 노동자 등은 활빈당을 결성하고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13조목 대한사민논설은 활빈당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58. 동양평화론

몽치면 성공하고 헤치면 패망하는 것은 만고에 몇몇이 정해져 있는 이치이다. 지금의 세계는 동서 반구로 나뉘어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기를 다반사로 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동양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개전하고 담판하는 자리를 여순 항구에 정했으며 이어 동양 평화 문제에 관한 의로운 싸움을 제기하는 바이니 여러분의 깊은 살핌을 바라는 것이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뤼순(여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안중근은 1910년 3월에 처형되어 “동양평화론”은 미완성 원고로 남았다.

59. 대한자강회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있을 따름이다. 우리 대한이 종전에 자강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스스로 우매함에 묶여 있고 국력이 쇠퇴하여 마침내 오늘의 위기에 이르러 결국 외국인의 보호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자강의 도에 뜻을 다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 ① 자강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교육을 진작함과 식산흥업에 있다.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면 백성의 지혜가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한다.

— ‘② 대한자강회 월보’, 제1호 —

- ① 대한자강회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 강제로 해산되었다.
- ② 대한자강회는 30여 개의 지회를 두고 월보를 간행하였다.

60. 조일통상장정(1883)

제9조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7조 만약 조선국에 가뭄·수해·병란(兵亂) 등의 일이 있어 국내 식량 결핍을 우려하여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미(糧米)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고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때는 그 시기를 미리 항구의 일본 상민(商民)에게 예고하여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방곡령을 내려 곡물의 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889~1890년 일부 지방관들이 방곡령을 내렸으나 일본 측의 항의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61. 한성순보 발간사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 소식을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실어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 반포하기로 하였다. ……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풀어주며 상리(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883년 정부는 박문국을 설치하고 열흘에 한 번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62. 독립신문 창간사

우리가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오, 또 구절을 띄어 쓰는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다.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한다.

1896년 창간한 ‘독립신문’은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되어 민권 의식의 향상에 힘썼다.

63. 교육입국조서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중략)… 이제 짐이 교육의 강령을 보이니, 헛된 이름을 물리치고 실용을 취하도록 하여라. …(중략)… 이 세 가지(덕·체·지)는 교육의 기강이니라. 짐은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그대들 신민의 학식으로써 국가 중흥의 대공을 찬성케 하련다. …(중략)… 왕실의 안전은 그대들 신민들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그대들 신민의 교육에 있다.

정부는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서양식 근대 교육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소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관립 학교를 세웠다.

64. 여권통문

우리보다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있는지라. 여자도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히고, 장성한 후에 남자와 부부의 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남자의 절제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후대함을 받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남자와 못지않아하므로 권리도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 우리나라도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 각기 재주를 배워 향후에 여중 군사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학교를 창설하오니, 뜻있는 위 동포 형제들은 각각 분발하여 귀한 여아들을 우리 여학교에 들여보내 시라.

— ‘황성신문’, 1898. 9. 8 —

1898년 서울의 양반 부인들이 조직한 찬양회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이란 글을 발표하고, 1899년 2월에 순성 여학교를 직접 설립하기도 하였다.

65. 독사신론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민족의 애국심이 사라질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역사를 쓰는 삶은 먼저 민족의 형성 과정을 적고, 정치는 어떻게 변영하고 어떻게 쇠퇴하였는지, 산업은 어떻게 융성하고 쇠퇴하였는지, 무공(武功)은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갔으며, 그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다른 민족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만일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

—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7일 —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왕조 중심에서 벗어나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66. 유교구신론

첫째는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 측에 존재하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고,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주의를 바꾸려는 생각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 주의를 지킴이요, 셋째는 우리 대한 유가에서 간이직절한 법문(양명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공부(주자학)를 전적으로 숭상함이라.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을 통해 유교의 3대 문제로 민중과의 괴리, 구세주의(救世主義)의 결핍, 주자학에의 경도를 지적하고,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되살리려 하였다.

67. 대한광복회

1. 부호의 의견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남북 만주에 사관 학교를 설치하여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3. 종래의 의병 및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6. 일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1915년 조직된 대한광복회는 만주에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각지의 부호들에게 의견금을 건었으며, 모금을 거부하는 반민족적 부호들을 처단하였다.

68. 대동단결선언(1917)

융희 황제(순종)가 삼보(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바로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간에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곧 민권이 발생할 때이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중략) 따라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곧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대통령 상소할 의무가 있다.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제6집 -

‘대동 단결 선언’은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 양여로 주장하면서 국민주권설을 정립하였다. 이에 이들은 해외 동포가 민족대회의를 개최하여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1919년 임시 정부 수립의 모체가 되었다.

69. 대한독립선언서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우리들의 평등 복리를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서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 쫓겨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바르게 한다. 한번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나, 개·돼지와도 같은 삶을 누가 바라겠는가.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는 같이 부활할 것이다.

1919년 1월 만주에서 독립 운동가 39명이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를 발표하고 일제에 대한 육탄 혈전을 결의하였다.

70만명의 선택, 검증된 역사 전문가!

70. 기미독립선언서

① 오등은 이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하게 하노라. …(중략)…

② 공약 3장

1. 금일 오인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① 3·1 운동 시에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작성하였다.

② 한용운이 공약3장을 추가하여 만세 시위의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71. 조선혁명선언(1923)

① ‘내정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운하는 자 누구이냐? ……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나 강도 정치 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 ② 민중은 우리 혁명의 중심부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①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외교론, 자치론, 준비론, 문화운동론 등의 독립노선을 기피주의, 타협주의로 비판하였다.

② ‘조선혁명선언’에서 신채호는 일제에 대한 폭력 투쟁의 정당성과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무정부주의(아나키즘)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72. 미쓰야 협정(1925)

제2조 중국 관헌은 각 현에 통고하여 재류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를 어긴 자는 체포하여 일본 관원에게 인도한다.

제3조 불령선인 단체는 해산하고 소지한 무기는 수색하여 이를 몰수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제4조 일본 관헌에서 지명한 불령단 수령은 중국 관헌에서 신속히 체포하여 인도한다.

- ‘재만 한인 취체 방법에 관한 협약’ -

‘불령선인 단체’는 독립군 단체, ‘불령단 수령’은 독립군 지도자를 가리킨다.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는 만주 군벌 장쥘린(장작림)과 이른바 미쓰야 협정(1925)을 체결하였다.

73. 한중 연합군의 활동

-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의 합의 내용(1931)
 1.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2. 중동 철도를 경계선으로 하여 ① 서부 전선은 중국이 맡고, 동부 전선은 한국이 맡는다.
- 조선 혁명군과 중국군의 합의 내용(1932)
 - ②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 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 ① 북만주 일대에서 지청천(이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 ②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74.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제3장 건국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가 고급교육의 면비수학(무상교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중략)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국민 계급에게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 제2장 복국(復國), 제3장 건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의 건설, 사회경제적으로는 균등사회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이론적 틀로 삼았으며, 대체로 민주사회주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75. 대일선전성명서(1941)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영·미·소·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파(擊敗)하게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 단위로써 추축국에 선전한다.
2. 1910년의 병합 조약과 일제의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을 존중한다.
3. 한국·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 정부는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천명하였다.

76. 치안유지법(1925)

- 제1조 ①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 외 지도자로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서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②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일제는 사회주의 사상과 단체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하였다.

77. 6.10 만세 운동

격고문

3. 횡포한 총독정치를 구축하고 일제를 타도하자.
4. 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
8. 동양척식회사를 철폐하자
11. 일본인 물품을 배격하자
13. 공장의 노동자는 총파업하라
14.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16. 소작제는 4·6제로 하고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하라
17. 소작권은 이동치 못한다

격문

조선 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78.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장엄한 학생, 대중이여 쫓겨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 경찰의 교내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 사회 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79. 정우회 선언, 신간회 해소론

〈자료1〉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자료2〉 소시민의 개량주의적 정치 집단으로 변질된 현재의 신간회는 무산계급의 투쟁욕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과 농민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농민은 농민조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료1〉 1926년 11월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 단체인 정우회가 발표한 선언문이다. 민족주의 계열과의 제휴를 주장하였으며, 신간회 탄생에 사상적 영향을 주었다.

〈자료2〉 1931년 사회주의 계열에서 제기한 신간회 해소론이다. 신간회가 개량주의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80. 민족적 경륜(1924)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 지금까지 해 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이광수, '동아일보', 1924년 -

이광수, 최린 등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정치적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1. 민립대학건립운동, 문자보급운동

○ 이제 우리 조선인도 세계 속에서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다른 나라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들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① 대학의 설립을 빼고는 다시 다른 길이 없도다.

○ 전 인구의 대부분이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학령 아동의 3할 밖에 취학할 수 없는 ② 오늘날 조선의 상태에서 간결하고 쉬운 문자의 보급은 민족이 가질 최대의 긴급한 일이라 하겠다.

① 1923년 이상재, 한규설 등은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고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순회 강연을 개최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

82. 조선 교육령

○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가 보통교육을 받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으로 6년으로 한다.

○ 제3차 조선 교육령(1938)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어), 산술, 국사(일본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창가, 체조이다. ② 조선어는 수의과목으로 한다.

① 제2차 조선 교육령은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소학교와 같이 6년으로 늘렸다.

② 제3차 조선 교육령은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조선어 교육의 약화를 가져왔다.

83. 조선어학회 사건

○ 주문(主文) : 피고인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중략)… 정태진에 대한 본건을 함흥 지방 법원의 공판에 부침.

○ 이유 : 소화 6년 이래로 피고인 이극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 운동 중 그 기초가 되는 어문(語文) 운동의 방법을 취하여 그 이념으로써 지도 이념을 삼아가지고, 겉으로는 문화 운동의 가면을 쓰고 조선 독립을 목적인 실력 배양 단체로서 본건이 검거되기까지 10여 년이나 오랫동안 민족 운동을 전개하여 온 것이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고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하여 탄압하였다(조선어학회 사건, 1942).

84.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 우리 동맹국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에게서 빼앗은 지역을 모두 중화민국에 반환할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략)… ① 우리 세 나라는 현재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 하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

○ ②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

① 카이로 선언에서 미·영·중 3국 정상은 한국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하였다.

② 포츠담 선언에서 미·영·중·(소) 정상은 한국 독립을 포함하여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85.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선언〉 본 준비 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 기관이요, 결코 혼잡한 협동 기관은 아니다.

〈강령〉 1.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광복 직후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일부 우익 세력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좌우 세력을 망라하여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8월 말에는 전국에 145개에 이르는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만들어졌다.

86. 좌우합작 7원칙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대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 (중략) ...
4.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의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6.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파 인사들은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와 '좌우 합작으로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3조, 4조는 좌우익 간의 쟁점이었던 토지 분배와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다.

87. UN총회, UN 안보리 결정문

○ 제2차 UN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조속히 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부임케하고 이 위원단에게 전 한국을 통하여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 UN 소총회 결의문(1948년 2월 26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 전역 선거의 감시를 진행시킬 것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②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의 한국 내 지역의 선거 감시를 진행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70만명의 선택, 검증된 역사 전문가!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1950년 6월 26일)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다. 이 지역에서 그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국제연합 제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① 1947년 11월 제2차 유엔총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인구비례로 자유총선거 실시'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하였다.

②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 사실상의 남한 단독 총선거를 결정하였다.

③ 1950년 6월 26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침략 세력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88. 농지개혁법

제1조 본 법은 헌법에 의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2. 다음의 농지는 본 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농지 개혁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상매수하여 농민에게 유상분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89.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2조 당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국은 육해공 전력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였다.

90. 사사오입 개헌

제55조 ①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부칙 : ②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당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4년이다.

② 개헌 당시의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다.

91. 제3차 개헌

제33조 ① **1**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② **1**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의원의 1/2을 개선한다.

제70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2**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 각 부를 지휘 감독한다.

- ① 양원제가 규정되고, 1960년 7월에 참의원과 민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졌다.
- ②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었다.

92. 6.3 항쟁(한일회담 반대 시위)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렴적 정보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상적 탈춤으로 변장됐고 굶주린 대중의 감각적 해방을 위한 독화의 미소를 띠었다. …… 국제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민족의 치떨리는 원수 일본 제국주의를 수입, 대미 의존적 반신불수인 한국 경제를 이중 예측의 철쇄로 속박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기만하는 반민족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1964. 5.) -

굴욕적인 한·일 협정 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93. 유신헌법

제39조 ① **1**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2**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① 유신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이었다.

94. 남북 기본 합의서(1991)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장〉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15조 남과 북은 ……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남북화해(제1장) 및 불가침(제2장), 교류와 협력(제3장)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95.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직접 만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규범력 있는 남북관계의 틀을 마련하였다.